제957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건축물관리점검지침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무량판 구조 건축물 점검 필요 장비(강화) ㅇ 무량판 건축물 장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은 반발경도측정기 및 철근탐사장비를 보유 ▶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4조 2.무량판 구조 건축물 점검기준 강화(강화) ㅇ 무량판 건축물은 정기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무량판 육안점검 추가 실시 – 주요구조부, 마감재 및 개구부의 육안점검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무량판 건축물은 최초의 정기점검(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)을 실시할 경우 설계도서 검토, 콘크리트 강도 측정, 전단보강철근 확인 등 장비점검 추가 실시 – 구조계산서 검토 및 콘크리트 비파괴강도(반발경도시험)·전단보강철근(철근탐사장비)에 대한 점검방법 등 규정 ▶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26조	1.비중요 2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2	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수립(신설) ㅇ (대상사업 및 규모 등) 모빌리티 향상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사업과 사업별 규모 또는 수요 기준 마련 – (도로) 총 10㎞ 이상 고속국도·일반국도·지방도 신설·확장·개량 – (철도) 총 15㎞ 이상 철도·도시철도 건설 – (공항) 연간 350만명 이상의 여객처리시설을 포함하는 공항 – (항만) 「항만법」에 따른 계류시설(컨테이너화물 하역능력 180만TEU/년 이상 또는 일반화물 하역능력 150만톤/년 이상) 및 연간 40만명 이상의 여객이용시설의 개발사업(부산·인천·제주항 평균 : 42만명) – (터미널) 대합실 면적이 1,800㎡ 이상인 터미널의 설치 사업 – (복합환승센터) 「통합교통체계법」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및 제2호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(건축연면적 30만㎡)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 ㅇ (대책내용) 모빌리티 개선 항목(접근성·안전성·편의성)별 내용 포함 ▶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관리주체의 등록보존의무 신설(신설) ㅇ 항만시설 관리주체는 항만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항만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(POMS)에 등록·보존해야 함 (개정안 제10조제1항) ㅇ 점검진단등을 완료한 날, 보수·보강·신축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,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자와 보수·보강을 실시한 자가 정보 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음 (개정안 제10조제2항) ▶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0조	1.비중요
4	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조합장 인계인수의무(신설) ㅇ 조합 임원이 사임, 해임 등의 사유로 임기만료,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25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을 2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하고,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▶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5	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사항 추가(강화) ㅇ 분기별 주택임대관리업체의 현황신고 시 신고해야 하는 정보에 주택임대관리업체와 임차인 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추가 ▶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2.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기준 강화(강화) ㅇ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 요건을 현행 1.5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▶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,제7조	1.비중요 2.비중요
6	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고시 제정안 (해양수산부)	1.선내 안전관리체계 구축(신설) ㅇ 사업주인 선박소유자에게 안전보건관리자를 임명하도록 하고(제7조),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명시함(제8조) ㅇ 선박소유자에게 선내 안전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고(제9조),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명시함(제10조) ㅇ 선박소유자에게 선상에서 거주환경, 위생과 선원의 질병 및 부상을 관리 할 수 있는 건강담당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(제11조), 건강담당자의 업무를 명시함(제12조) ㅇ 선박소유자에게 선원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여 선내 작업이 수행되는 지를 모니터링 하는 안전대표자를	1.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 5.비중요 6.비중요 7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선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(제13조), 안전대표자의 업무를 명시함(제14조) ㅇ 안전대표자에게 선내 작업이 선원의 인명과 건강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판단될 경우 선내 작업을 일시 중지할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(제15조) ㅇ 선원수 5인 이상이 되는 선박에 선내안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(제16조) ㅇ 정부기관의 요청시 안전대표자 및 선내안전위원이 요청 정보를 제공을 의무화하고 선내 안전 및 작업환경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을 의무화도록 규정(제21조) ▶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고시 제15조,제16조,제21조,제7조,제8조,제9조,제10조,제11조,제12조,제13조,제14조 2.직무상 사고 등 보고 의무(신설) ㅇ 선박소유자에게 선내 재해 발생시 즉시 재해 현황과 상항을 즉시 보고하고 1개월 이내에 해상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함(제23조) ▶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고시 제23조 3.안전기준(신설) ㅇ 선박소유자에게 선내 위험성 식별을 위한 매년 자체적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위험성 평가와 작업환경 변화에 따른 추가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도하며, 식별된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조치를 수행하도록 규정(제27조) ㅇ 선박소유자에게 선내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을 정비하도록 함(제31조) ㅇ 선박소유자에게 기계류의 방호장치, 접촉 등으로부터의 방호(제32조), 통행과 승하선 안전(제33조), 밀폐구획에서 탈출장치 등(제34조), 연소되기 쉬운 폐기물의 처리(제35조), 액화석유가스의 취급(제36조), 관계통의 표시(제37조), 안전·보건표지(제38조), 선내조명(제39조), 바닥 위 등의 안전(제40조), 작업발판 등에서의 안전(제41조), 수중 추락의 방지(제42조), 작업 전 승인제도(제43조), 안전작업관리기준(제44조)을 마련하여 선박에 제공하도록 함 ▶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고시 제42조,제43조,제44조,제27조,제31조,제32조,제33조,제34조,제35조,제36조,제37조,제38조,제39조,제40조,제41조 4.위생기준(신설) ㅇ 선박의 거주구역 및 설비에 관하여 안전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준수해야할 각종 위생기준을 마련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▶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고시 제56조,제57조, 제58조,제45조,제46조,제47조,제48조,제49조,제50조, 제51조,제52조,제53조,제54조,제55조 5.검지기구 및 진동·소음 등 기준(신설) ㅇ 선박소유자는 ①검지기구 · 보호구를 마련하고 ②소음 · 진동 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함 – 선원의 안전을 위하여 검지기구(안 제59조), 보호구(안 제60조), 진동감소 조치(안 제61조), 진동보호구의 지급 등(안 제62조), 유해성 등의 주지(안 제63조), 진동기계 · 기구 사용설명서의 갖춤(안 제64조), 진동기계 · 기구의 관리(안 제65조), 소음 노출의 체계적 예방(안 제66조), 소음감소 조치(안 제67조), 표시(안 제68조), 주기*와 선교**사이의 연락(안 제69조),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(안 제70조), 보호구의 관리(안 제71조),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등(안 제72조), 소음수준의 알림 등(안 제73조) 안전 확보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 ▶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고시 제71조,제72조, 제73조,제59조,제60조,제61조,제62조,제63조,제64조, 제65조,제66조,제67조,제68조,제69조,제70조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6.개인보호장비 및 작업장비 기준(신설) ㅇ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박소유자는 우선적으로 선원에게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해야 하며, 작업장비는 안전하고 사용이 편이하도록 설계되고 선내에 배치되도록 안전기준을 정함 ▶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고시 제77조,제78조, 제74조,제75조,제76조 7.교육훈련(신설) ㅇ 선박소유자에게 자체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액체화물의 경우에는 화물의 취급방법, 보호구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·보관하도록 함 ▶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고시 제80조,제81조, 제82조,제79조	
7	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미생물 기준 신설(신설) ㅇ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식품(식품자동판매기에 넣어 최종제품 그대로 판매하는 가공식품과 음료류는 제외)의 미생물 기준 신설 * (대장균) n=5, c=2, m=0, M=10 (식중독균) 살모넬라, 황색포도상구균,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, 장출혈성 대장균 등 ▶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. 3. 4)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8	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(보건복지부)	1.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기준(신설) ㅇ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[별표4]에 따라 설치하는 음압격리병실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기준 설정 ▶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	1.중요
9	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(경찰청)	1.채용후보자의 자격 상실(강화) ㅇ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요건 추가 - ▵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, ▵중징계 사유(파면, 해임, 강등, 정직)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, ▵경징계 사유(감봉, 견책)의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▶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9조	1.비중요
10	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(환경부)	1.물순환촉진구역 내 행위 제한 대상(신설) ㅇ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 대상을 법률에 따라 명확화 - 법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에 나무의 벌채 및 식재, 다년생 식물을 새로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추가로 규정 ▶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및 해제기준(신설) ㅇ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으로 ①교육과정, ②교육시설 · 장비, ③교수, ④운영계획 조달계획을 적절하게 갖추도록 하고, (안 제23조제3항) – 지정 해제 가능 기준으로 ①거짓 ·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, ②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을 양성하지 않은 경우, ③교육 · 훈련 미이수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, ④지원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를 규정 * 거짓 ·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엔 반드시 지정해제 ▶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	